

위생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(제50조의5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(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)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다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,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각의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분할 수 있다.
- 라.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.

1) 가중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중대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감경 사유

- 가)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인 경우
나) 위반의 내용·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다) 해당 교육훈련기관이 3년 이상 모범적으로 운영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
라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 반 내 용	근거법령	처분기준			
		1차 위반	2차 위반	3차 위반	4차 이상 위반
1.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	법 제30조의3	지정취소			

한 방법으로 위생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	제1항제1호				
2.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의3 제1항제2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3.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	법 제30조의3 제1항제3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
4. 법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교육수료증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	법 제30조의3 제1항제4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
5. 법 제30조의2제6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결과 교육훈련실적 및 교육훈련내용이 매우 부실하여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30조의3 제1항제5호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	
6. 법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은 경우	법 제30조의3 제1항제6호	업무정지 1개월	업무정지 3개월	업무정지 6개월	지정취소